

ASIAN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CENTRE

A charitable institution limited by guarantee registered in Hong Kong

(서울사무소)

결 정 문

사건번호: KR-0800027

신청인: 퍼패티 반 멜 에스 피 에이

피신청인: choi jae won

1. 당사자 및 분쟁 도메인이름

신청인: 퍼페티 반 멜 에스 피 에이, 이탈리아 공화국 밀라노라나트 7-20020 비아 엑스엑스브이 아프리레

대리인: 특허법인 리앤목,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71-18 청화빌딩

피신청인: choi jae won, 대한민국 송파구 방이동 51 번지 서결빌딩 2층

분쟁도메인이름들은 "e-chupachups.com"이며, 피신청인에 의해 "주식회사 가비아(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182-13 대륭포스트타워 2차 11층)에 등록되어 있다.

2. 절차의 경과

신청인은 2008. 8. 22. 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조정센터(ADNDRC) 서울사무소(이하 '센터'라고 함)인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도메인이름의 이전을 구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008. 8. 22. 센터는 등록기관에게 등록인의 정보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등록기관은 2008. 8. 22. 센터에 등록인의 확인등 세부사항을 확인해주었다.

2008. 8. 25. 센터는 분쟁해결신청서가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 (이하 "규정"이라 함), 통일도메인이름 분쟁해결규정을 위한 아시아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센터 보충규칙 (이하 "보충규칙"이라 함)에 따른 형식적 요건의 충족 여부를 점검하였다.

2008. 8. 25. 센터는 "신청서 전송 표지"를 분쟁해결신청서와 함께 전자우편으로 피신청인에게 발송하였고, 등기우편을 통해 피신청인에게 발송하여 2008. 9. 2.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었음을 배달증명 우편을 통해 확인하였다.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마감기일을 2008. 9. 21.임을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였다.

2008. 9. 23. 피신청인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에 답변서미제출통지를 2008. 9. 25. 피신청엔게 통지하였다.

2008. 9. 25. 센터는 이 사건의 분쟁해결을 위한 1 인조정부로서 황보영 조정위원에게 선임을 요청하였고, 2008. 9.29. 황보영 조정위원은 조정위원으로서의 승낙 및 중립성과 독립성의선언을 확인 받아 2008. 9. 29. 조정부 구성예정통지를 하였고절차규칙 제 7 조에 따라 적법하게 2008. 10. 6. 조정부를 구성하였다. 센터는 관련 서류 일체를 2008. 10. 6. 조정부에서송부하였고 2008. 10. 7. 조정인에게 도달하였음을 배달증명우편을 통해 확인하였다.

3. 사실관계

신청인은 과자 및 사탕제품에 대한 다국적 제조업체로서, 현재 한국을 비롯하여 약 100 여개국에 "ChupaChups" 및 이를 포함하는 로고(이하 "본건 등록상표"라 함)를 '사탕, 과자 등'의 제과류를 중심으로 의류, 안경, 장난감, 문방구류 등의 다양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로 등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ChupaChups" 브랜드로 막대사탕 제품을 판매해오고 있다. ChupaChups 제품은 스페인에서 1958 년도부터 판매되기 시작하여 2003 년까지 약 150 개 국가에서 연간 약 40 억개의 제품이 판매되었으며 한국내에서도 1982 년부터 판매되기 시작하여, 세계적으로는 연간 약 10 억개, 한국내에서는 연간 평균 약 95 억원 정도가 판매되어 왔다. 또한 ChupaChups 제품은 막대사탕 부분에서는 한국에서 62%의 시장점유율의 보이고 있으며 매일경제 선정 1998 년 4 월 인기상품 품목별 판매순위에 있어 식품분야의 판매 5 위를 기록하는 등, 다양한 광고 및 기사 등을 통하여 제품 및 ChupaChups 브랜드 자체가 홍보 및 보도된 바 있다.

피신청인은 분쟁 도메인이름을 등록, 보유하고 있다. 분쟁 도메인이름은 "포워드 방식"으로 타 사이트로 이용자를 자동이동시키는 목적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본 신청서 작성일 현재 분쟁 도메인이름은 ㈜옥션의 쇼핑사이트(www.auction.co.kr)로 자동 포워딩되도록 설정되어 있다.

4. 당사자들의 주장

A. 신청인

신청인의 주장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분쟁 도메인이름은 "e-chupachups"로 구성되어 있는바, "e-" 부분은 "electronic"을 의미하는 약어로 식별력이 없으며, 따라서 분쟁 도메인이름은 신청인의 본건 등록상표와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
- 피신청인은 "chupachups"라는 용어는 물론 분쟁 도메인이름에 대한 어떠한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가지지 않는다.
- 본건 등록상표는 주지저명한 상표로서 피신청인이 분쟁 도메인이름을 포워드 방식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신청인의 등록 및 사용을 방해하려는 부정한 목적의 것일뿐 아니라 포워드된 사이트가 물건을 판매하는 사이트인 이상 피신청인의 행위는 또한 신청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B.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이에 대하여 어떠한 답변서도 제출한 바가 없다.

5. 검토 및 판단

규정 제 4 조 (a)항에 따라 신청인은 신청한 구제를 받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 모두를 입증해야 한다:

- (i) 신청인이 권리를 갖고 있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와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는 것,
- (ii) 등록인이 그 도메인이름의 등록에 대한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는 것, 그리고
- (iii)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및 사용되고 있다는 것.

A. 상표와 본건 분쟁 도메인이름의 유사

분쟁 도메인이름은 "e-chupachups"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e-"와 "chupachups"로 쉽게 구분될 수 있다. 또한 분쟁도메인이름의 앞 부분을 이루는 "e-"란 인터넷 혹은 electronic 을 일컫는 약어로서, "e-mail", "e-비즈니스", "e-스포츠" 등의 예에서와 같이 인터넷과의 관련성을 나타내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그 자체로는 뚜렷한 식별력을 가지지 않는다할 것이다. 그렇다면 분쟁 도메인이름의 주된 요부는 "chupachups"로, 이는 본건 등록상표와 동일하다. 따라서 분쟁도메인이름은 본건 등록상표와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 할 것이다.

B. 피신청인의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

피신청인은 이에 대하여 어떠한 답변도 한 바 없으며, 오히려 신청인의 주장 및 제출자료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분쟁 도메인이름 및 이를 구성하는 "chupachups"라는 명칭에 대하여 어떠한 정당한 이익이나 권리는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C.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건 등록상표는 한국은 물론 세계적으로도 널리 알려진 주지저명한 상표로 인정되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 어떠한 정당한 이익 혹은 권리를 보유하지 않은 피신청인이 이와 극히 유사한 분쟁 도메인이름을 등록하고 사용하는 것은, 본건 등록상표의 저명성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용자들의 오인을 야기시킨 다음 이를 이용하여 분쟁 도메인이름을 방문하게 하도록 하거나, 최소한 정당한 권리자인 신청인이 분쟁 도메인이름을 등록 및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부정한 목적을 가진 것으로 인정된다. 나아가, 실제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을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한 이용자들을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제 3 자의 사이트로 자동 접속하기 위한목적으로 사용하였는바, 이는 이와 같은 부정한 목적을 여실히나타내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분쟁 도메인이름의 등록 및사용에 대한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 역시 인정된다.

6. 결정

위에서 검토한 바에 따라, 본 조정부는 규정 제 4 조 (i)항 및 절차규칙 제 15 조에 따라서,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분쟁 도메인이름들인 "e-chupachups.com"을 이전할 것을 결정한다.

황 보 영 1인 조정부

결정일: 2008. 10. 27.